

총직원수

387명

(의사직제외)

대상인원

135명

필수유지인원

63명

## 필수유지업무 협정서

2010년

전라북도 군산의료원

# 필수유지업무 협정서

## 【전문】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(이하 “노조”라 함)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함)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 시 환자들의 생명유지·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상 필수유지업무가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·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 키로 한다.

## 제1조 【명칭】

본 협정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필수유지업무협정(이하 “협정”이라 함)이라 한다.

## 제2조 【목적】

본 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“노조법”이라 한다.) 제42조의2에서 제4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제2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, 필요최소한의 유지·운영수준, 필요인원 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【유일교섭단체】

사용자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.

## 제4조 【용어의 정의】

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
- 「필수유지업무」라 함은 의료원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·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.
- 「필수유지대상직무」라 함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의 별표1에 의거하여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직무를 정한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말한다.
- 「필수유지업무인원」이라 함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,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 전원을 말한다.
- 「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비율」이라 함은 해당업무의 평상시 운영수준에 비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업무를 필요최소한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할 비율을 의미한다.

5. 「필수유지업무조합원」이라 함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이 협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근로시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조합원을 뜻한다.
6. 「응급의료업무」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, 구조, 이송,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.
7. 「중환자」라 함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.
8. 「수술」이라 함은 수술실에서 행하는 응급수술을 말한다.

## 제5조 【적용범위】

- ① 이 협정은 노조와 사용자 및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 또한 본 협정은 단체협약과 별개임을 확인한다.
- ② 기존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 조항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## 제6조 【협정체결의무】

- ① 노조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노사자율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 노력한다.
- ②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③ 협정의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업의 중대한 변경, 법령의 개정 등 본 협정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7조 【노동조합의 의무】

- ①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하며, 쟁의행위 시 본 협정에서 합의된 대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다.
- ② 노조는 이 협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.

## 제8조 【사용자의 의무】

- ①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와 다른 노동자(필수유지업무인원 중 쟁의행위 참가자,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의 조합원)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특히 쟁의행위 불참 및 근로를 이유로 격려금 지급, 휴가 부여, 승진고과 상위 배정, 각종 교육 참가 우선권 및 인사배치 전환 등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.

## 제9조 【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유지·운영비율】

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유지·운영비율은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제10조 【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원칙】

노조와 사용자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협정에 대한 논리를 진행한다.

- 유지·운영비율 결정시에는 총인원이 아니라 off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한 유지비율임을 확인하며,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duty 인원을 동시 명기한다.
- 유지·운영비율 산정 시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하되, 부속합의서에 의한다.

## 제11조 【필수유지업무 관련 이행 원칙】

- 노조와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전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위하여 노력하며, 중환자실 환자를 제외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한다.
- 입원환자 중 행려환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. 이때 필요한 만큼 중환자 병상을 증설할 수 있으나, 현재 개설되어 있는 중환자실 공간에 한하며 새로이 다른 중환자실을 개설할 수는 없다.

## 제12조 【필수유지업무 이행의 절차】

노조와 사용자는 필수유지 업무 이행 시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- 노조는 쟁의행위 개시 24시간 전까지 본 협정이 정하는 필수유지대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근무자 명단을 쟁의 행위 기간, 쟁의행위 규모에 따라 적정기간의 근무자, 근무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통지받은 인원 중 쟁의행위 기간 중 근무해야 할 인원을 검토하여 확정되었음을 쟁의행위 개시 12시간 전까지 노조와 그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전항의 명단은 서면 통지일 현재 필수유지대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명단 외에 예비적으로 1인을 포함한다.
-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통지받은 인원이 휴가,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통

지하고, 노조는 이를 대체할 명단을 사용자에 통지해야 한다. 사용자는 이때 자체 없이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 종사할 자를 지명하여 노조와 그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- ④ 노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필수 유지업무분야에서 종사할 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나, 비조합원의 우선 근무 지정이 선차되어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당초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로 지명된 자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특정 사정에 의해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특정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노조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노조는 그 특정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을 시, 사용자가 임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며, 추가 근무 인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제13조 【사회적 책무 및 긴급구난 시 협조】

쟁의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진료권역내에서 천재지변, 대형사고, 법정전염병 등으로 대규모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노사는 공동 대처하기로 한다.

### 제14 조 【기타】

본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사 신뢰에 근거하여 노사 관행에 따른다.

### 제15 조 【협정서의 보관】

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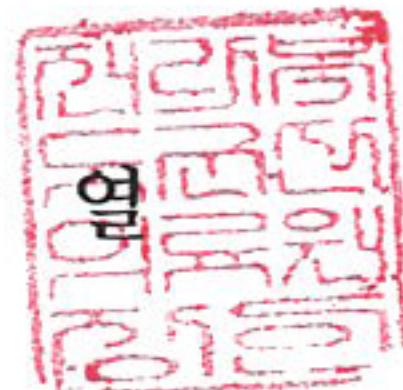
## 【부 칙】

본 협정은 협정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
2010 . 12 . 31 .

전라북도 군산의료원

원장 이상열

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
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지부  
지부장 이현주

